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우장산의료기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대여제품 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보호자)와 복지용구를 사용함에 있어 상호 지켜야할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대여제품인 경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기준으로 하되 제품의 제공 급여가액에 수급자별 본인부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일시적 병원입원으로 인하여 공단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것으로 한다.

단, 판매제품인 경우는 구입제품의 고시가격에 본인부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경우 변경된 금액을 적용해서 변경계약을 한다.

라.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대여 또는 구매한 복지용구 고시금액에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내에 있는 본인부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본인부담율 : 15%, 9%, 6%, 0%(기초수급자)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지정된 경감비율 적용 금액으로 한다.

마.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제품에 대해 수급자가 급여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및 환경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다) 복지용구 판매제품 사용 중 발생한 A/S요청건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대여제품 사용시 발생한 A/S에 대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처리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라) 복지용구 관련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발생시
정보를 공유하고, 불편 또는 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신원인수인은 복지용구 제공에 필요한 욕구사정 정보를 제공할 의무
나) 본인부담율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다) 주소이전 등 인적사항 정보 변경시 통보할 의무
라) 병원입원(예정) 또는 서비스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 또는
대여제품 탈락 등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할 의무
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신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여제품에 대해 반납할 의무
사) 복지용구 계약에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제공의무(등급, 본인부담율 변경시는 변경된 서류제공)
아) 개인정보 동의 의무

바.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대여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병원입원, 요양원 입소)
-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안되었을 경우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고시(“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여제품 급여비용이 변경되었거나 수급자의 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 등 아래
사항에 해당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처리 절차에 따라 변경계약을 하고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계약서를 송부한다.

가. 수급자의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복지용구 대여제품 급여비용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라. 병원입원으로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원한 경우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또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의 유효기간내
급여가 가능한 대여 또는 판매제품을 장기요양급여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160만원).
- 2) 수급자의 등급 및 건강상태에 따라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다를 수 있다.
- 3)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제품에 대한 목록은 아래와 같다.

대여제품	판매제품	
	품목명	구매연한
전동침대	지팡이	2년마다 1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3년마다 1개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변기	5년마다 1개
이동욕조	목욕의자	5년마다 1개
배회감지기	성인용보행기	5년마다 2개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마다 1개
경사로(실외)	간이소변기/대변기	적용구간내 2개
	안전손잡이	적용구간내 10개
	요실금팬티	적용구간내 4개
	자세변환용구	적용구간내 5개
	미끄럼방지 양말	적용구간내 5개
	미끄럼방지 매트	적용구간내 6개

	경사로(실내)	2년마다 6개
--	---------	---------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1) 수급자는 적용구간내 급여비용(160만원)내에서 대여 또는 구매한 금액에 본인부담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 3) 병원입원에 따라 급여비용이 추가로 발생 된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이 추가 비용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가. 배송방법

- 1) 복지용구 배송은 기관의 복지용구 배송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배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송된 물품의 종류 및 갯수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복지용구 급여제공 기록지에 확인을 받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복지용구 사용방법을 상세히 설명 해드린다.
- 2) 대여제품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설치 하며, 설치일정은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설치 전문업체를 활용한 경우에도 사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해 주도록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재고관리

- 1) 복지용구 재고관리는 판매 및 대여제품을 분리하여 관리 하며, 대여제품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관리 한다.
- 2) 복지용구 판매제품은 수시로 파악하여 수급자에게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5.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가. 소독대상 복지용구

- 1) 소독대상 복지용구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로 대여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나. 소독실시 형태

- 1) 소독실시 형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근거로 소독대행 전문업체를 통하여 실시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근거한 소독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소독 한다.
- 2) 소독이 완료된 제품에는 반드시 소독필증을 부착하여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하고 한 부는 수급자에게 교부 한다.

다. 소독제품의 보관

- 1) 소독한 제품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 한다.

6. 제품 사후관리(A/S)에 관한 사항

가. 수리 및 유지보수

- 1) 수리 및 유지보수 대상 제품은 판매제품과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처리 한다.
- 2) 판매 제품인 경우 A/S발생시 공급업체에 신속히 연락하여 제품의 하자인 경우는 즉시 교체하고 수급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인 경우는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규정에 따라 유/무상 수리를 하도록 한다.
- 3) 대여 제품인 경우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다른 제품으로 우선 교체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에 신속하게 A/S를 하도록 요청하고 A/S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 한다.

나. A/S처리 기한

- ※ A/S처리 기한은 사용 제품에 따라 즉시 교체 또는 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협의 후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한을 정하고 기관은 처리과정을 모니터링 한다.
- ※ 제품에 대한 하자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공급업체에 통보하여 개선 하도록 한다.

다. 시설물(대여제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 1) 대여제품(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배회감지기, 경사로, 이동욕조)은 기관의 자산으로 기관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 2) 대여제품에 대해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3) 대여제품에 대해서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원만히 배상을 해야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